내용 일반법인 중소기업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(조특법§25의6) - 투자금액의 3%(대기업), 7%(중견기업) - 국내･외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% \* 공제시기：방송･영화상영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(조특법§29의3) - 중견기업 15% - 재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 × 30%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(조특법§29의3) - 중견기업 15% - 근로자(남성포함)가 6개월 이상 육아 휴직 후 복귀시 인건비의 30% 세액공제 \* 아이 1명당 1번만 적용,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(조특법§29의4) -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× 5%(중견기업 10%) -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× 20% -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 × 5% (중견기업 10%) -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 × 20%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(조특법§29의7) -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아래 금액 구 분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상시 근로자 450 450 - 청년 정규직, 장애인 근로자 등 800 900 400 500 \*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대기업 2년, 중견기업 3년 적용 -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아래 금액 구 분 중소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청년정규직, 장애인근로자 등 1,100 1,300 \*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3년 적용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(舊조특법§30의2) - 중견기업이 2021.6.30. 현재 비정규직을 2022.12.31.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700만원 - 2021.6.30. 현재 비정규직을 2022.12.31.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1,000만원 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(조특법§30의3) - 위기지역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동일 - 세액공제：연간 임금감소 총액×10% +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× 15%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(조특법§30의4) 해당없음 - 청년(15∼29세), 경력단절여성 상시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100% - 청년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 보험료 50%(신성장서비스업 75%)